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상휘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8971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정 지 은

목 차

Ⅰ. 개요 ····· 1

Ⅱ. 주요 내용별 검토 ····· 2

1.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한도 확대 혹은 폐지 등 (이상휘의원안) ·· 2

Ⅰ. 개요

1. 이상휘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8971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상휘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3. 14.

(3) 회 부 일 : 2025. 3. 1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을 받는 경우 규정된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부가 이혼할 때 분할된 재산에 대해서는 배우자 간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측면에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재산의 형성과정에서 배우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배우자의 기여분을 감안하여 그 한도액을 설정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한도 확대 혹은 폐지 등(이상휘의원안, 권영세의원안, 박충권의원안, 최은석의원안)

현 행	개정안
□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제12조)	□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배우자 상속 추가
○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상속세 비과세	○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상속세 비과세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 금양임야 등	- (현행과 같음)
- (신 설)	-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 받은 금액(최은석의원안)
□ 배우자 상속공제(제19조)	□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한도 확대, 삭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가액 공제	○ (현행과 같음)
- 최대한도: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	- 한도 삭제(권영세·박충권의원안)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한도 확대 : 배우자의 기여분 고려 추가 상향 (이상휘의원안)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A-B+C)×D - E A: 비과세되는 재산 등을 제외한 상속재산 B: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C: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D: 「민법」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E: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A-B+C)×D - E+F A: 비과세되는 재산 등을 제외한 상속재산 B: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C: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D: 「민법」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E: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F: 「민법」제1008조의2에 따른 배우자의 기여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현 행	개정안
□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따른 정비	□ 중복공제 배제 등(권영세의원안)
○ 상속세 과세가액(제13조)	○ 배우자 사전 증여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미가산
○ 가업상속공제(제18조의2)	○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배우자 상속분 제외
○ 그 밖의 인적공제(제20조)	○ 배우자에 대한 장애인 공제 미적용
○ 일괄공제(제21조)	○ 배우자 단독 상속 시 기초공제 및 그 밖의 인적공제 미적용
○ 금융재산 상속공제(제22조)	○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서 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융재산 및 금융채무 제외
○ 재해손실 공제(제23조)	○ 재해손실 공제대상에서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 제외
○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제30조)	○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우자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제외

* 이상휘의원안 2025. 3. 14. 발의(의안번호 8971), 권영세의원안 2025. 3. 17. 발의(의안번호 9015) 박충권의원안 2025. 3. 28. 발의(의안번호 9469), 최은석의원안 2025. 8. 5. 발의(의안번호 11976)

□ 4건의 개정안은 배우자 간 상속에 대하여는 이를 비과세로 하거나 상속공제 최대한도를 확대 또는 폐지하려는 것임.

이상휘의원안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한도를 배우자의 기여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만큼 상향하려는 것이고

권영세의원안, 박충권의원안은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30억원 및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한도)를 폐지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가액 전체를 공제함으로써 배우자 간 상속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으려는 것임.

추가로, 권영세의원안은 ① 가업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 공제 등 물적공제 대상에서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은 제외하도록 하고, ② 장애인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배우자 단독 상속 시 기초공제 및 기타 인적공제, 배우자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배우자 상속공제와 기존 공제 제도가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또한, ③ 배우자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도록 한 부분[1]은 배우자 상속 시에는 개정안에 따라 배우자 상속 재산가액이 전액 공제되어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므로, 배우자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의 경우도 합산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됨[2].

최은석의원안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 받은 재산을 비과세하려는 것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3조(권영세의원 대표발의, 9015호)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2) 법 제13조에서 사전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한 것은 사전 증여를 통해 높은 누진세율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취지로, 개정안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폐지하게 되면 높은 누진세율을 회피할 목적으로 배우자에게 사전 증여할 유인이 사라지게 되므로 배우자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할 필요성이 적음.
만약,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폐지하면서 배우자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하도록 둔다면 ① 배우자에게 사전 증여하지 않고 상속한 경우는 전액 공제되어 그만큼 과세표준이 낮으나, ② 배우자에게 사전 증여한 경우는 증여한 재산가액이 과세가액에 합산되어 과세표준이 높아지게 되어 양자 간 세액차이가 발생하게 됨.

으로, 전액공제의 형식으로 과세하지 않는 권영세의원안, 박충권의원안과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한 배우자 간 상속에 대하여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점에서 그 효과는 유사한 것으로 보임[3].

□ 현행법[4]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30억원 혹은 배우자의 「민법」상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이때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한도는 수유자를 제외한 모든 상속인이 10년 이내 증여 혹은 사후 상속받은 총 재산가액 중 배우자의 「민법」상 법정상속분[5]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배우자가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

배우자 상속공제는 다른 인적공제보다 비교적 높은 한도를 허용하

---

3)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시 총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 및 상속공제가 차감됨. 다만, 배우자 상속공제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고, 비과세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최은석의원안은 비과세 대상을 거주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거주자인 배우자간 상속에 대해 과세되지 아니하는 점에서 유사한 효과가 있음.

상속세 과세표준= 총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공과금·장례비·채무 +사전증여재산 - 상속공제 - 감정평가 수수료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한도금액 = (A - B + C) × D - E A: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B: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C: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D: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E: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2. 30억원

5)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고 있는데, 이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배우자 간 부의 이전은 동일 세대 간 수평적 자산 이전으로 해당 상속재산은 추후 자녀 세대로 이전될 때 과세될 수 있는 점, 피상속인의 사후 남아 있는 배우자의 생활 안정 보장 측면을 고려한 것임.

[상속세 인적공제 제도]

구분	공제금액
기초공제(A)	2억원 (비거주자에게도 적용)
배우자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 최대한도: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과 30억원 중 적은 금액 - 최소한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보다 적더라도 5억원 공제
기타 인적공제 (B)	자녀공제: 1인당 5,000만원 미성년자공제: 1,000만원 × 19세 잔여연수 연로자(65세 이상)공제: 5,000만원 장애인공제: 1,000만원 × 기대여명(통계청고시) 연수
일괄공제	기초공제(A)와 기타 인적공제(B) 합계액 5억원 미만 시 5억원 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1990년 이전까지는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가 1991년부터 1994년 이전까지는 1억원에 결혼연수에 비례한 금액을 가산하여 공제하였고, 1995년에는 10억원 한도로 실제상속가액을 공제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997년부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30억원 혹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두는 방식으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음.

[배우자 상속공제 연혁]

구분	공제금액
~1990	4000만원
1991~	1억원+(결혼연수 ×600만원)
1994~	1억원+(결혼연수 ×1,200만원)
1995~	① 또는 ② 선택 ①: 1억원+(결혼연수 ×1,200만원), ② : 실제상속가액 (10억원 한도)
1997~ 현재	실제상속가액, 한도: MIN(법정상속분, 30억원)

2024년 기준 배우자 상속공제는 10,589명에 대하여 8조 2,377억원 공제되었으며, 최근 5년간 배우자 상속공제 결정 인원 수와 공제금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배우자 상속공제 현황]

(명, 억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피상속인 수	5,341	6,551	8,032	10,115	10,589
공제금액	39,755	49,206	61,745	79,502	82,377

자료: 국세청

□ 배우자 간 상속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거나, 공제한도를 확대 혹은 폐지하려는 개정안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타당한 입법취지가 있음.

첫째, 배우자 간 상속은 동일 세대 간 수평적 자산 이전으로 추후 자녀 세대가 해당 자산을 상속받을 때 과세될 수 있으므로 부의 세습을 억제하고자 하는 상속세 기능 측면에서는 과세 필요성이 직계비속의 상속과 같이 크지 않은 반면, 배우자 상속 시 과세하면

남은 배우자의 사망 후 자녀가 상속받을 때 또 한 번 과세하는 이중과세 문제가 있으므로 배우자 상속 단계에서는 상속세를 과세를 하면 안된다는 것임.

이는 상속세가 부의 세습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산이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무상 이전될 때 과세되어야 하고 동일세대에 속하는 배우자간 재산의 이전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면세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동일세대 1회 과세원칙'에 근거하고 있음.

이러한 '동일세대 1회 과세원칙'의 관점에서는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권영세의원안, 박충권의원안과 배우자간 상속재산에 대해 비과세하도록 하는 최은석의원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

둘째, 현행의 공제한도는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배우자의 실질적 기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완화 혹은 해소할 수 있음.

부부를 하나의 경제적 단위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에는 각 배우자가 기여한 바에 따라 일정한 지분이 있고, 그 지분 한도 내에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개인의 재산권 보장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음.

이는 배우자 간 상속을 혼인생활 기간 중에 함께 노력하여 축적한 공동재산의 지분을 분할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이른바 '부부공동재산의 지분분할론'에 근거한 것으로, 법원은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

하여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청산·분할로 보아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음[6].

그런데, 이러한 '부부공동재산의 지분분할론'의 관점에서는 현행의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공동재산 중 본인의 지분을 가져오는 것임에도 과세되는 한계가 있다는 것임.

이러한 측면에서 개정안은 「민법」상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이 낮거나 상속재산가액이 공제한도액(30억원) 보다 커 실질적으로는 공동재산에 해당함에도 과세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셋째, 그간의 물가상승을 고려할 때 공제액 한도의 확대를 통한 세부담의 적정화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한도 금액은 1997년 이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데, 2020년 소비자물가지수를 100이라고 할 때 1997년 물가지수는 56.977, 2024년 물가지수는 114.18로서 실질적인 공제한도가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넷째, 미국, 영국, 프랑스 등 OECD 다수 국가에서 생존 배우자의 상속세를 전부 면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6) 2016두589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생 략)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OECD 주요국의 상속세 과세방식 및 배우자·자녀 인적공제 현황]

구분	과세방식	최고세율	배우자·자녀 인적공제
한국	유산세	50%	배우자 30억원 자녀 5천만원* * 일괄공제 5억원 가능
덴마크	유산세	15%	배우자 비과세 자녀 321,700크로네(≒ 6천1백만원)
영국	유산세	40%	배우자 비과세 자녀 50만파운드(≒ 8억3천만원)
미국	유산세	40%	시민권자인 배우자 비과세 증여세와 통합공제 1,292만달러(≒ 166억원)
벨기에 (브뤼셀)	유산취득세	30%	배우자·자녀 각 1만5천유로(≒ 2천1백만원)
칠레	유산취득세	25%	배우자·자녀 각 4만3천750달러(≒ 5천6백만원)
핀란드	유산취득세	19%	배우자*·자녀 각 2만유로(≒ 2천8백만원) * 배우자에 관한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경우 9만유로 추가
프랑스	유산취득세	45%	배우자 비과세 자녀공제 10만유로(≒ 1억4천만원)
독일	유산취득세	30%	배우자공제 50만유로(≒ 7억1천만원) 자녀공제 40만유로(≒ 5억7천만원)
그리스	유산취득세	10%	배우자·자녀 각 15만유로(≒ 2억1천만원)
헝가리	유산취득세	18%	배우자·자녀 비과세
아일랜드	유산취득세	33%	배우자 비과세 자녀 335,000유로(≒ 4억8천만원)
이탈리아	유산취득세	4%	배우자·자녀 각 1백만유로 (≒ 14억2천만원)
일본	유산취득세	55%	배우자 세액공제* 1억6천만엔 (≒ 14억8천만원) 자녀공제 6백만엔(≒ 5천5백만원) 기초공제 3천만엔(≒ 2억7천만원) * 법정상속분과 1억6천만엔 중 큰 금액 상당 세액을 공제
리투아니아	유산취득세	10%	배우자·자녀 비과세

구분	과세방식	최고세율	배우자·자녀 인적공제
룩셈부르크	유산취득세	16%	배우자 비과세 자녀 법정상속분 비과세
네덜란드	유산취득세	20%	배우자 723,526유로*(≒ 10억3천만원) 자녀 22,918유로(≒ 3천2백만원) * 연금수급권에 따라 186,915유로까지 감액
폴란드	유산취득세	7%	배우자·자녀 10,434즈워티(≒ 3백만원)
포르투갈	유산취득세	10%	배우자·자녀 비과세
슬로베니아	유산취득세	-	배우자·자녀 비과세
스페인	유산취득세	34%	배우자·자녀 각 15,956유로(≒ 2천3백만원)
스위스	유산취득세	50%	배우자·자녀 비과세

*출처: Ernst&Young Worldwide Estate and Inheritance Tax guide

자료: 기획재정부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부부공동재산의 지분분할론'에 근거한다면 "공동재산 중 배우자의 지분을 초과한 상속재산" 혹은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과세하는 것이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민법」과 부의 무상이전에 따라 증가한 자산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증여세와의 관계상 적절할 수 있음.

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도록 하고,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하도록 규정[7]하여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고,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원칙적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한도를 폐지하거나 비과세하는 개정안의 경우 피상속인 특유재산이나 공동재산 중 배우자의 지분이 아닌 부분까지 배우자는 전액 무상으로 받게 될 수 있는 것임.

둘째, 배우자 공제 최고한도 금액(30억원)의 폐지 혹은 비과세는 상속세를 부담하는 사람 중에서도 현행 30억원의 공제수준으로는 부족할 만큼 상속재산이 많은 일부에게 그 혜택이 귀속되고, 일정 세수감소 효과가 수반될 것으로 보임.

최근 5년간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중 30억원 금액 한도가 적용된 건은 총 1,122건으로, 해당 기간 전체 배우자 상속공제 결정 건 40,628건 대비 2.7% 수준임.

---

7)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배우자 상속공제 규모별 결정 건 수]

공제금액 규모별	합계	2020	2021	2022	2023	2024
배우자 상속공제 전체 결정건수	40,628	5,341	6,551	8,032	10,115	10,589
5억원	23,872	3,416	3,960	4,686	5,727	6,083
5억원 초과 10억원 미만	9,870	1,096	1,622	2,011	2,508	2,633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4,648	554	621	884	1,310	1,279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116	137	155	223	292	309
30억원	1,122	138	193	228	278	285

자료: 국세청

세수효과는 향후 배우자의 재산상속 여부, 상속재산 가액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자료의 부재로 개정안에 따른 구체적인 세수효과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나[8],

30억원 금액한도가 적용된 상속 건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2024년도 기준 평균 63.3억원)을 고려할 때 일정 세수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8) 권영세의원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배우자 상속재산 구간 별 배우자 상속재산 현황(30억원 공제한도 적용 건)]

(건, 억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구간별	2021			2022			2023			2024		
	건	상속 재산	평균	건	상속 재산	평균	건	상속 재산	평균	건	상속 재산	평균
30억 이상 50억 이하	137	4,802	35.1	154	5,493	35.7	193	6,900	35.8	205	7,386	36.0
50억 초과 80억 이하	34	2,144	63.1	37	2,239	60.5	53	3,221	60.8	49	2,995	61.1
80억 초과 100억 이하	5	436	87.2	9	808	89.8	13	1,143	87.9	11	986	89.6
100억 초과	17	3,198	188.1	28	104,605	3,735.9	19	11,772	619.6	20	6,683	334.2
합계	193	10,581	54.8	228	113,144	496.2	278	23,035	82.9	285	18,050	63.3

자료: 국세청

셋째, 배우자 상속공제의 과도한 확대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가령,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가 있었다면 자녀에게 상속하였을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우자가 상속하게 될 경제적 유인이 되고, 부의 젊은 세대로의 이전을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특히, 최대주주등의 주식을 당장의 상속세 부담을 덜기 위해 배우자가 상속하게 되면 기업승계가 지연되거나 주식 명부상 최대주주와 실질 경영자가 상이하게 되어 기업 경영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음.

넷째, 이상휘의원안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한도 계산 시 「민법」 제1008조의2[9]에 따른 배우자의 기여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9)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규정에 따른 기여분은 상속인의 특별한 기여에 따라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임.

따라서, 공통된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세법의 특성을 감안할 때 동 규정을 인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문 의 처
02)6788-5161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